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Vol. 2014-08

# 여연브리프

YDI BRIEF

발행일 2014년 11월 27일

## 사회협약의 정치를 위한 모색 (Ⅱ) - 아일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 - 목 차 -

요 약

I. 논의 배경 .....	1
II.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정치 .....	2
III. 시사점 및 제언 .....	14
참고문헌 .....	20

작성 : 이형선 연구위원  
(02) 2070-3329



## 《 요 약 》

-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는 어떻게 ‘유럽의 낙오자’에서 ‘켈틱 타이거’로 우뚝 설 수 있었는가?” “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 20세기말까지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농업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협약을 맺으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
  -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주춤했으나 최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상황
  - 외국인 투자 유치, 발전국가와 함께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 온 사회협약의 정치가 아일랜드 발전의 핵심적 역할
  
-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의 정치를 위한 제도적 조건이 미비해 사회협약이 “거의 이뤄질 것 같지 않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주요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 - 사회협약에 대한 가치 부여와 지지 - 와 문제 진단과 바람직한 해결책에 대한 공유된 인식(shared understanding)을 바탕으로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
  
-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성공 요인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 사회경제적 상황 (경제위기) △ 가톨릭 사회교리 △ 협력적 정치문화 등이 작용
  - 주체적 측면에서 △ 국민적 공감대 △ 노·사의 인식 변화와 전략적 선택 △ 정부의 강력한 주도 △ 광범위한 사회 네트워크 △ 의제의 포괄성과 정책 우선순위의 이동 등이 사회협약 정치 성공을 가능케 함
  - 반면, △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 △ 사회 불평등 해소에 미흡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점 △ 참여 확대와 광범위한 의제 설정이 낳은 부정적 결과 등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함

- 우리나라는 사회협약의 정치를 위한 객관적·조직적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회협약의 정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임
  - 다시 말해, △ 주요 행위자들의 사회협약의 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 △ 적대적 노사관계의 전통 △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의지나 역량 부족 △ 배타적 정치 문화 등이 사회협약의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 다만,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의지, 역량이 훨씬 중요한 만큼 사회협약의 유용성, 필요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가치’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사회협약의 정치, 협력과 상생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 다수제와 합의제의 조화 △ 심의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함
  - 첫째는, 다수결이 지니는 정당성, 효율성, 안정성, 책임성을 인정하면서 소수의 이익이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승자와 패자, 다수와 소수 간 만족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합의제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는, ‘초갈등 사회’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 사회의 갈등양상을 예방,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의민주주의(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와 같은 열린 논의방식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함
  - 이를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통해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국가공론위원회’와 같은 갈등조정 기구를 통한 민주적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I. 논의 배경

-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심각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교착상태
  -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고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느끼고 있으며<sup>1)</sup>, 특히,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와 정당의 역할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
  -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과 같은 노·사 관련 이슈는 물론이고 연금제도 개혁, 공기업 개혁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사회협약의 정치에 대한 재인식
  - 1970년대 후반 이후 코포라티즘 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
  - 한편에서는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한 국가 차원의 노·사·정 단체 교섭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코포라티즘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제도이다”라고 비판
  -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도 각국에서 사회적 협의회가 진행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적 파트너십은 노사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특히, 사회협약을 위한 제도적 조건이 없어 사회협약이 “거의 이뤄질 것 같이 않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 여기서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배경과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1) 내일신문 조사 결과(10.6),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매우 심각’(43.9%), ‘심각한 편’(48.7%, 이상 92.6%), ‘심각하지 않다’(4.9%). 5년 전에 비해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더 심해졌다’(66.0%), ‘비슷하다’(28.7%), ‘완화됐다’(3.0%). “정치뉴스만 보면 짜증난다(항상+자주)” (82.3%), “정치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69.3%), “좋아하는 정당 없다”(77.3%) 등

## Ⅱ.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의 정치

### 1. 개요

#### ‘유럽의 낙오자’ 에서 ‘켈틱 타이거’ 로

- 인구 470만 명의 소국인 아일랜드는 1980년대 전반까지 유럽에서 산업화가 가장 뒤쳐진 농업 국가로 ‘유럽의 낙오자’로 불렸음
  - 1922년 독립 이후 아일랜드는 극단적이라 할 정도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하려 했으나 실패
  - 1960년대 이후 자유무역과 개방으로 선회하여 외국기업 유치와 수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
  - 여기에는 △ 고질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경제위기 △ 대량의 해외 이민<sup>2)</sup>으로 인한 민족의 존립 위기 △ 토착기업에 의한 수출산업 육성 실패 △ 정치적 연합의 변화와 경제 민족주의의 재해석 등이 작용
- 1980년대 중반부터 재정 안정화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협약을 통해 외자유치, 노사협력, 고용안정, 경제회복, 사회보장을 달성
  - 1990년대 들어서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 수출산업 육성 등을 바탕으로 1995~2002년까지 연평균 8.8% 가까이 성장하는 성취를 기록, ‘켈틱 타이거(Celtic Tiger)’로 포효하면서 ‘유럽의 광채(shining light)’로 불렸음
  - 1988년에서 2000년 사이에 132%의 실질 GDP 성장을 기록했고,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 달러('88)에서 2002년 3만4천 달러, 2006년에는 4만5천 달러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16.3%('88)에서 4.4%('06)로 크게 감소

2) 1922년 독립 이후 2000년대 초 ‘켈틱 타이거’로 불리기 이전까지 외국으로 나간 순수 해외이민의 수는 약 1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2008년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인건비 상승, 인플레이션, 부동산 자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아 2011년 11월 EU, IMF 등에 구제금융을 신청
  - 이후 △ 재정 건전화 △ 안정적 투자환경 유지(낮은 법인세율) △ 수출경쟁력 회복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 2013년 12월 PIIGS 5개국<sup>3)</sup> 중 처음으로 구제금융에서 졸업
  - 특히, 이전의 사회협약과는 다르지만 2010년 ‘크로크파크 합의’ 및 비공식적 프로토콜과 같은 새로운 조정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도출함으로써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음<sup>4)</sup>
- 아일랜드의 발전모델의 3대 축은 △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적극적 대외 개방의 산업정책 △ 1990년대 등장한 발전주의 국가<sup>5)</sup> △ 이익집단들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협약이라고 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아일랜드 경제발전의 배경으로 △ 1992년 유럽 단일시장의 완성 △ EU의 구조기금<sup>6)</sup> △ 외국인 투자자본의 대량유입 △ 양질의 노동력 △ 낮은 법인세 △ 정부조직 개편 등이 지적됨
  - 그러나 무엇보다 1987년부터 시작되어 20년 넘게 유지·발전해 온 사회적 파트너십 및 정책협의 시스템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됨

3) 2010년 당시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이라고 지목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말함

4) 경제위기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201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982 달러로 영국의 111%를 상회하고 있음

5) 한국은 국가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민 대표기업을 보호·육성하고 ‘독립적인 국가경제’ 건설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관료적 발전주의 국가’의 특징을 지닌 반면, 아일랜드는 토착기업 보호보다는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와 같이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계 비약적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발전주의 국가’로 명명할 수 있음(권형기, 2014).

6)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빈곤한 나라를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기금 등이 있으며, 아일랜드 정부는 구조기금을 사회간접자본과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교육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했음

## 2. 사회협약의 추진

### 1) 경과

- 1970년대까지는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에 실패
  - 파편화된 다원주의적 노조들 간 상호경쟁, 노·사 조직의 위계적 권위 부재, 사회민주당의 약세와 정부의 자유방임적 국가 운영 등이 원인<sup>7)</sup>
  - 1980년대 후반까지 영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가까운 체제로 갈등적 노사 관계 전통이 강하고 상호 불신이 깊어 노·사·정 주요 행위자들이 정치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수립에 실패
-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사회협약 추진
  - 1980년대 초 경기침체와 인플레이, 빈번한 노사분쟁의 악순환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늘어나는 실업률로 사회적인 위기감 고조<sup>8)</sup>
  - 1987년 집권한 Fianna Fail당은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공공부문의 축소, 민영화, 정부지출 감소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모
  - 노동계는 영국의 노조 약화의 영향을 우려,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 1987년 첫 사회협약(‘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 PNR) 실현
  - 2008년까지 3년마다 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8차례의 사회협약

7) 아일랜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 위협에 취약해 결속력이 강하고, 인종·종교·언어 면에서 대단히 동질적이어서 코포라티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코포라티즘적 사회 조정을 위한 제도적 조건의 부재로 사회협약이 “거의 이뤄질 것 같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됨(권형기, 2014). 코포라티즘을 위한 제도적 조건으로는 △ 중앙 집중화된 노사단체의 리더십과 노사 간 대등한 교섭력 △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존재 △ 정부의 적극적 역할(협약 준수를 보장하는 의지·능력) △ 협력과 신뢰의 노사문화 등이 지적됨

8) 1981~87년 동안 실질소득 7% 감소, 17% 실업률, 평균 12%의 인플레이션, GDP의 8%가 넘는 공공적자, GDP의 125%에 달하는 국가부채, 조세부담의 급증 등으로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함(심상용,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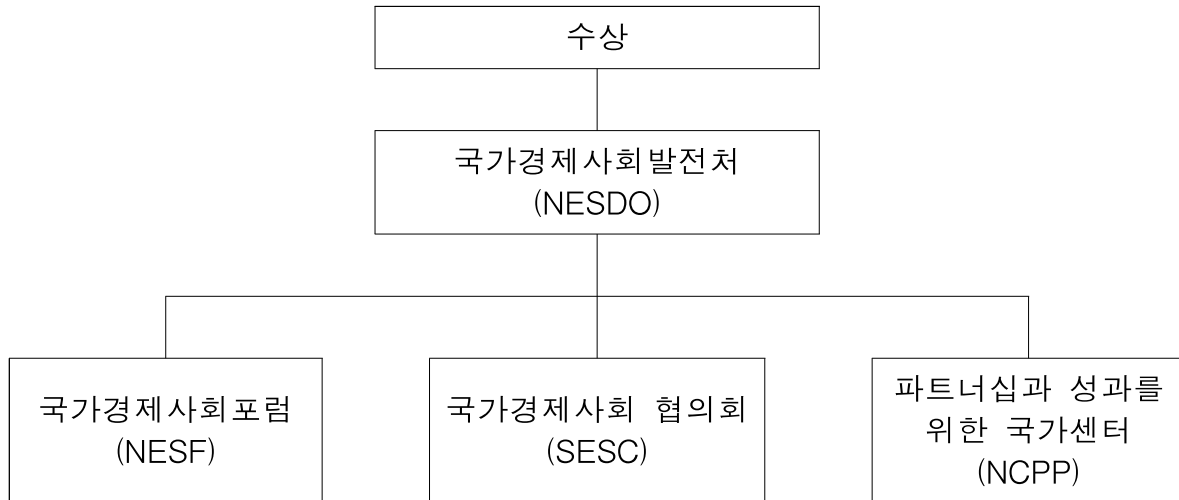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제3의 사회적 합의와 조정 방식 채택
  -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존의 삼자협상 체제는 포기했지만 자유시장경제로 가지 않고 보다 느슨한 형태의 조정방식으로 안정적인 긴축재정을 시행,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 사회 파트너들이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던 통로가 사라지고 공적·사적 부문이 구별되었으며, 협상도 보다 비공식적 형태를 취했고, 의제도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이슈 보다는 임금, 서비스 같이 보다 협소한 문제로 축소

## 2) 논의 기구

- 수상부 직속 국가경제사회발전처(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NESDO)에 편입된 NESC, NESF, NCPP가 주축
  - 각각의 기구들은 사회적 파트너십을 지속시키기 위한 협의, 협상, 이행, 이행 점검 그리고 피드백을 위한 제도로서 역할
- 2002년 설립된 NESDO는 수상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NESC, NESF, NCPP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
  - 산하에 있는 3개 기관의 정책개발 활동을 연계·조정, 협력적 정책개발 추진
- 1973년 설립된 국가경제사회위원회(National Economic Social Council, NESC)는 경제의 효율적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연구한 전략 보고서를 3년마다 발간, 이를 기초로 정책협약과 협약이 이뤄지도록 함
  - NESC는 의장, 부의장, 노조 5인, 사용자 5인, 농업조직 5인, 정부대표 5인, 사회단체 5인, 전문가 5인 등 총 32명의 위원으로 구성
- 1993년 설립된 국가경제사회포럼(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NESF)은 사회적 파트너십의 확대, 특히 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자문, 프로그램의 이행 점검과 평가 기능을 담당
  - NESF는 의장, 부의장, 정당 15인, 노조 5인, 사용자 5인, 농업조직 5인, 사회단체 15인, 중앙정부 5인, 지방정부 5인, 전문가 5인 등 총 62명으로 구성

- 2000년 ‘국가파트너십과 성과 센터(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NCPP)’를 설립, 사회협약이 개별 사업장으로 확산되어 합의적 노사관계로 수용·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NCPP는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 2인, 노조 4인, 사용자 2인, 전문가 4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

[그림 1] 논의 기구



### 3) 주요 성과

- 사회협약은 안정적인 임금 억제를 기본 축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과 장기적인 산업 평화, 거시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통해서 아일랜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
- 첫째, 임금 억제로 기업 이윤율을 상승시켰고 기업은 재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냄
- 둘째, 노사 분쟁을 줄이고 노사 양측 모두를 위해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발전시킴
- 셋째,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가능해 일관된 사회경제 정책을 펼 수 있게 됨
- 넷째,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에 정치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이 협력적으로 접근하게 됨

### 3. 주요 특징(성공 요인)

#### 1) 환경적 측면

- 사회경제적 상황 : 국가부도 직전의 경제위기 발생
  -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마이너스 성장 등 1980년대 말까지 10년 이상 지속된 경제 침체로 국민들이 위기의 심각성과 경제개혁의 필요성 절감
  - 경제위기 극복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역점 의제로 설정
  - 이전에는 정부가 사적 영역의 조율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이슈와 공공정책을 연계하는 조정 시도도 드물었음
- 가톨릭 사회교리의 영향
  -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sup>9)</sup>하는 가톨릭 사회교리는 아일랜드 사회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가톨릭 사회교리는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조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
- 보수 양대 정당<sup>10)</sup>과 연정을 통한 협력적 정치문화의 존재
  -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찾기 어려워 대립이나 갈등 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지속됨
  - 단기이양식 투표제<sup>11)</sup>로 과반수 정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연정이 일반적<sup>12)</sup>

9) 1891년 교황은 사적 소유권의 폐지나 계급투쟁 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사랑으로 계급 간의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기독교적인 처방을 담은 칙령을 발표(선학태, 2006)

10) 아일랜드 정당 정치는 보수 양당 체제. 이념이나 종교가 아닌 아일랜드 통일에 관한 입장(보다 구체적으로는 1922년 '영국-아일랜드 조약'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구분됨, 최대 정당인 Fianna Fail(아일랜드 공화당)은 '아일랜드 전사들'라는 뜻을 지닌 중도파 정당으로 소농, 근로자, 중하위층의 지지를 얻고 있음, Fine Gael(아일랜드 통일당)은 '아일랜드 가족 또는 부족'이라는 뜻으로 진보적 중도 정당을 표방하며 대농, 전문인,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음. 군소 정당으로 노동당, 녹색당, 진보적 민주주의자, 민주적 좌파 등이 있음.

11) 단기이양식 투표방식(single transferable vote, STV)은 1인 다수제의 특성을 살린 비례대표제로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매우 높은 비례성을 가질 수 있고, 다수당이 나타나게 하여 연립정부 성립의 배경으로 작용, 한 선거구에 3~5석이 배정되고, 유권자는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순서대로 후보 이름을 명기하면, 정해진 드롭쿼터( [총 유효표/의석수+1] +1)를 기준으로 당선자를 결정. 드롭쿼터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선호 투표수를 나머지 후보들에게 이양하여 쿼터를 넘는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자가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이양

-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강력한 사회민주당이 없이<sup>13)</sup> 민족주의에 기초한 포괄정당(catch-all party)과 포폴리즘이 주를 이루는 정치적 환경

## 2) 주체적 측면

###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심각한 경제위기로 분파적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포괄적 이익을 우선시 하도록 하는 공동의 이해 형성<sup>14)</sup>
- 사회협약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사회협약 수립과 안정적 재생산의 결정적 요인

### ○ 노동조합<sup>15)</sup>의 전략적 선택

-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신자유주의의 득세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반성적 재해석을 통해 투쟁적 전략보다 사회적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임금 인상 보다는 협상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함
- 실제 1987년 체결된 사회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은 자제했지만 세금 감면 등으로 실질소득은 증가
- 여기에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전략으로 노조운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노조 지도자들의 사고 변화와 노력도 작용

### ○ 사용자<sup>16)</sup>들의 인식 변화

- 사용자들은 정부의 설득과 위협, 그리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난 극복에 불참할 때 안게 될 도덕적·정치적 부담 속에서 사회협약에 참여

12) Fianna Fail이 독립 이후와 상당기간 단독/연정을 통해 집권했고, Fine Gael은 1973~1987년, 1994~1997년 집권했고, 최근에는 2011년 총선 승리로 Fine Gael-노동당 연정 수립

13) 1914년 결성된 노동당은 2000년대 초까지 평균 10%대 초반의 득표로 제3당에 머물고 있음

14) 1999년 대국민 조사에서 78%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협약이 중요하다고 응답(임상훈·루치오 바카로, 2006)

15) 아일랜드노총(Irish Congress of Trade Union, ICTU)은 전체 노조의 90% 이상을 확보, 조직화 수준이 높음

16) 전국적 조직인 아일랜드기업경제인총연합(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 IBEC)는 기업 측을 대표하는 협상 파트너

- 사회협약으로 노동 쟁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공공정책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설계할 수 있게 함

○ 정부의 강력한 주도

- 1987년 첫 사회협약(국가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PNR)에는 집권당인 Fianna Fail(Charles Haughey 수상)의 지도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결정적 역할<sup>17)</sup>
- 노·사 및 시민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보다 대화와 양보를 통한 협력적 행동을 유인
- 정부는 경제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에서 일자리로’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

○ 광범위한 사회네트워크의 발전

- 노사정 삼자주의를 넘어 농민,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주체와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 형성
- 여기에 정당, 각종 위원회, 워킹그룹, 분쟁조정포럼들 간에 구성되고 발전된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큰 역할

○ 의제의 포괄성 및 정책 우선순위의 이동

- 임금, 노사관계뿐 아니라 세제, 이민, 농업정책 등 다양한 경제사회정책을 다룸
- 1987년의 첫 사회협약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성장, 경쟁력 강화에 역점, 1990년대 중반부터는 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 증대, 기술 증진 등에 초점
-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1997년 4차 협약부터는 형평과 사회적 소외 배제에 역점<sup>18)</sup>

17) Fianna Fail은 NESCA가 1986년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정책적 처방을 담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임금 억제, 공공재정 건전화, 세제 개혁, 공공부문 구조개혁,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보호 등)을 1987년 총선 공약에 반영했고, 총선 승리(과반수에서 3석 부족) 후 이를 적극 추진

18)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을 동시에 포함.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부조 프로그램(아동급여, 고아연금, 유족연금, 미망인수당, 입양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수당, 노령연금 등)을 도입, 사회지출을 유지·확대(신동면, 2005)

- 2000년대 중반 사회협약의 ‘사회적 전환’을 계기로 긴축재정 보다는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보다 평등주의적인 사회와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동<sup>19)</sup>
- 2006년 향후 10년(2006~2015)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담은 사회협약(‘2016년을 향하여’)

## 4. 비판적 평가

### ○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sup>20)</sup>

- 사회협약을 통한 국정운영 방식이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본질적인 지적(“사회 파트너십이 선거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
- 선출되지 않은 이익집단들에게 권력을 제공, 정책 의제의 의회 내 논의를 회피/차단하고 정부 재량을 제약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사회협약 과정의 수평적·수직적 확장을 통해 민주적 약점을 보완하고 정당성을 높이고자 했음

### ○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

- 무엇보다 북유럽의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코포라티즘에 비해 사회복지 강화와 사회 불평등 해소에서 크게 미진하다는데 주목한 좌파 학자들은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sup>21)</sup>
- 다만, 사회 불평등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더라도 절대적 의미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수입에 큰 상승을 가져왔다는 점은 사실

19) 2000년대 들어서 사회협약의 의미가 임금인상 자제 보다는 ‘부의 공정한 배분’에 더 초점을 두게 되면서 팽창적 재정정책을 펴게 되고, 이로 인한 방만한 재정 관리, 인플레이션 심화, 임금 상승, 부동산 버블 조절 실패 등은 아일랜드 경제에 새로운 위기를 불러왔음

20) 아일랜드 내에서도 1987년 첫 사회협약을 두고 찬반 토론이 붙었을 때 Fine Gael과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사회협약이 지나치게 ‘코포라티즘적’이라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면서 반대했음. 민주적 책임성이 없는 사적 이익집단이 공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라는 것. 그러나 첫 번째 사회협약 이후 비판이 크게 줄었고, 야당들도 사회협약의 목적과 효용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사회 파트너십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음

21) 지니계수나 빈곤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지출은 1994년부터 200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공적 사회지출(GDP 대비)은 15.9%(2003년 현재, OECD평균은 20.7%)이고, 1인당 조세부담률도 25.7%(OECD 평균 37.3%)에 머물고 있음

○ 참여 확대와 광범위한 의제 설정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고<sup>22)</sup>, 단순한 노사정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정책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등 의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 다양한 단체의 난립으로 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회적 조정이 어려워졌으며, 많은 단체들의 경쟁적 지대 추구로 비용이 가중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음

○ 사회협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갈등 해소에 핵심적 역할

- 2000년대 말의 위기에서는 문제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으며, 오히려 사회협약이 위기의 원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됨
- 그러나 사회협약을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특정 이슈에 다른 집단 간 이해갈등은 해결될 수 있음
- 아일랜드의 발전 경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를 지닌 사회 계급간 이해 조정(interest intermediation)과 협력(cooperation)이 필수적임을 일깨워 줌

---

22) 1993년 국가경제사회포럼(NESF)의 설립 이후 노·사·정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 파트너들 외에 제3의 당사자들인 시민단체(실업자 단체,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빈민단체, 종교지도자위원회 등)들에게 사회적 파트너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함

&lt;표 1&gt;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이름(약칭)	기간	주요 내용	임금 합의 준수율
국가재건 프로그램 (PNR)	87~91년 (3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임금인상률 2.5%내 제한</li> <li>- 소득세 감면 등 조세개혁</li> </ul> </li> <li>• 국가부채 축소, 조세원 확대</li> <li>• 취약계층 보호 위해 사회복지 지출의 유지 및 확대</li> </ul>	94%
경제사회 진보 프로그램 (PESP)	91~94년 (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NR 협약의 기본 전략 유지</li> <li>• 지방수준으로 협약 확장</li> <li>•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부당한 해고 방지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li> <li>• 1년차 4%, 2년차 3%, 3년차 3.75% 임금 인상</li> </ul>	93%
경쟁력·일자리 프로그램 (PCW)	94~97년 (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안정과 세금 감면의 이전 협약 기본틀 유지</li> <li>• 고용창출 노력(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li> </ul>	93%
파트너십 2000 (P2000)	97~00년 (3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참여의 깊이와 폭 확대</li> <li>• 사회협약을 회사 단위로 확장</li> <li>• 사회 불평등의 소외 극복 위한 프로그램(사회적 배제의 척결)</li> </ul>	89%
번영과 공정성을 위한 프로그램 (PPF)	00~03년 (3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안정/세금 감면 기본 틀 유지</li> <li>• 공공부문의 임금 형평성</li> <li>• 어린이 수당과 연금 및 기타 수당 인상</li> <li>• 정책 초점을 거시경제정책에서 노동기술의 공급 측면으로 이전</li> </ul>	73%



지속적 진보 (SP)	03~05년 (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인상 자제</li> <li>• 주택보급 확대 및 물가상승 억제</li> <li>• 강제 퇴직수당의 인상</li> <li>• ICTU와 IBEC에 의한 공동 직업 훈련 강화</li> </ul>	87%
2016년을 향하여 (T2016)	06~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10년간 사회협약 기본 틀 정립</li> <li>• 사회정책과 경제적 번영의 보완적 관계 형성</li> <li>• 활력있는 지식경제 발전 추구</li> </ul>	
이행기 합의 (TA)	08.10~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부문에서 21개월간 총 6% 임금 인상</li> <li>• 공공부문에서 11개월의 임금 인상 자제 후 총 6% 임금 보장</li> <li>• 고용 보장</li> </ul>	12.5~50% (낮은 준수율)
크로크파크 합의 (Croke Park Agreement)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에서 정부-노조 합의</li> <li>• 정부는 고용 안전 보장</li> <li>• 노조는 임금 인상 억제 및 유연한 노동 재배치에 합의</li> </ul>	
프로토콜 (Protocol)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부문에서 고용주 단체와 노조 간 양자협약</li> <li>• 임금 협상을 위한 비공식적 가이드라인</li> <li>• 임금 동결</li> </ul>	

\* 출처 : 권형기(2014), 노사정위(2008) 참조

### Ⅲ. 시사점 및 제언

#### 1. 우리나라 사회협약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체적인 의지, 역량,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

- 주요 행위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공유된 인식이 바탕
  - 아일랜드는 영미식 자유시장 경제에 사회협약의 전통이 거의 없고 제도적 조건이 미비해 사회협약이 “거의 이뤄질 것 같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음
  - 그럼에도 주요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 - 사회협약에 대한 가치 부여와 지지 - 와 문제 진단과 바람직한 해결책에 대한 공유된 인식(shared understanding)을 바탕으로 사회협약에 성공
  - 결국 이해가 다른 사회집단 간 조정과 협력이 사회경제 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역량, 노력이 크게 작용
- 우리나라는 사회협약의 정치를 위한 객관적 · 조직적 조건이 미흡
  -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의 공유,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 정부의 중재를 바탕으로 사회협약이 시도됐고 이후 유사한 시도가 계속됨<sup>23)</sup>
  - 그러나 사회협약의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 협력적 정치문화 부재와 같이 객관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회협약의 정치의 실현 가능성은 요원해 보임
- 사회협약의 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
  - 노 · 사 모두 분열적이어서 주요 행위자로 간주되기 어렵고, 적대적 노사관계의 전통이 강해 상호 이익교환의 자세를 결여하고 있음

23)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결성되고, 같은 해 2월 6일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기본권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협약 발표.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하고 노사정위를 탈퇴(1999.2.9)하여 실행되지 못함.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2·6 사회협약) - 정부는 규제 완화,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 · 금융 지원 확대,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고용조정 최소화, 노동계는 임금안정에 협력), 2006.9. 타결된 ‘노사관계 법 · 제도 선진화 방안’ 역시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 최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렸으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음.

-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보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나 역량 부족
  - 특히,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적公私 개념이 강해 노·사나 시민단체 같은 사적 이익대표들이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협력적 정치문화 부재
- 아일랜드는 다수당이 없어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연정을 구성해야 했고, 정당이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을 주도
  - 반면, 우리 정치권은 적대적 정당체계로 상대를 배제하는 것이 곧 내가 옳음을 보장한다는 식의 배타적 사고가 팽배
- 그러나 제도적 조건 이상으로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행동이 중요
- 무엇보다 노·사·정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정치사회 세력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너무 크며, 상대를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사회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를 주요 행위자이자 협력 파트너로 인정한 다음 '공유된 이해와 가치'를 넓혀 나가는 자세가 필요

## 2. 사회협약 정치를 위한 제언

“민주주의는 정당 ‘내부가’ 아니라 정당 ‘사이에’ 있는 것이다.”<sup>24)</sup>

- 미국의 정치학자 E.E. 샤프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 -

- 사회협약의 정치, 협력과 상생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 다수제와 합의제의 조화 △ 심의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적 갈등 관리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함

### 1) 다수제와 합의제의 조화

- 민주주의 정치체제 유형<sup>25)</sup>으로서의 다수제와 합의제
  - 합의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sup>26)</sup>은 다수제를 ‘다수자의 독재’라고 비판하며, 합의제는 승자와 패자간의 만족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이른바 ‘다수의 최대화(maximization of majority)’를 통해 ‘포용의 정치’를 이룰 수 있고, 권력 분점을 통해 진정한 다수를 승자로 만든다고 주장
  - 이를 비판하는 입장<sup>27)</sup>은 다수제와 합의제라는 용어 자체가 합의제가 우월하다는 편향성을 담고 있다면서 ‘다수의 최대화’를 주장하는 합의제에서도 야당은 배제되고, 심지어 ‘소수에 의한 다수의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24) 하나의 정당이 아닌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지닌 정당들이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의미

25) 다수의 의지에 의해 정부를 구성·운영하는 다수제 모델(majoritarian model)과 가급적 많은 사람을 포괄하는 합의제 모델(consensus model)로 구분된다고 함(Lijphart, 1999). 다수제 모델은 단일 다수 정당에 의한 내각 구성, 내각의 의회에 대한 강한 지배력, 양당제도, 불비례 선거제도 등이 특징이고, 합의제 모델은 연정을 통한 행정부 권한 분산, 의회와 행정부 권력의 균형, 다당제, 비례대표 선거제도 등이 특징

26) 다수제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과대대표 또는 과소대표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집권한 집권당의 독자적 정책 추진으로 소수자 배제가 발생. 다수제에서의 ‘다수’는 절대 다수가 아닌 ‘근소한 과반’에 불과한 반면, 합의제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해와 근접한 이념과 정책을 추구함.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와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에서는 권력이 공유되고 분점되고, 정책결정은 타협과 합의에 의해 운용될 수 있음

27) 합의제는 “태생부터 가치 편향적”(김준석, 2010)이며, 합의제가 ‘다수의 최대화’를 주장하지만 제1정당과 군소정당이 연정을 하면 제1야당과 차점자 야당은 배제될 뿐만 아니라 연정 과정에서 소수 정파의 목소리가 과장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전체의 이해와 실제 정책과의 괴리가 클 수 있다고 함. 정당 간 정책연합은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당과 유권자 간의 책무성 문제도 발생. 아울러 복잡하고 시간을 소모하는 결정 과정,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정책집행에 대한 구성원의 소극적 지지, 모든 참여자가 만족하는 대안의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됨

- 다만, 다수제든 합의제든 모두 원내 다수(과반 이상)의 지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김준석, 2010)
  - 차이는 “의회 다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해결하는 방식 - 선거 결과로 해결할 것인가 vs. 선거 후 연정으로 해결할 것인가 - 에 있다는 것임
- 결국 다수제와 합의제의 조화를 이뤄 갈등을 해결해야 함
  - 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도 공동체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합의제적 요소들로 보완<sup>28)</sup>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수결 원리는 소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 소수파의 의견 청취, 소수파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 방식
  - 다수의 결정이 지니는 정당성, 효율성, 안정성, 책임성을 인정하면서 소수의 이익이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승자와 패자, 다수와 소수 간 만족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합의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심의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적 갈등관리

- 아일랜드 사회협약은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성격을 지님
  - 공식적 · 비공식적인 사회 네트워크가 발전함으로써 다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심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이점인 상호 이해가 확산되고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선택들과는 다른 제3의 대안을 모색하게 됨
  - 단순한 임금 협상에서 벗어나 ‘고용’의 문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미래지향적 복지 모델의 창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의제로 삼아 해결방안을 추구
- 정치는 갈등에 대한 대응
  - 우리 사회는 지역, 계층, 세대를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공갈등 등 크고 작은 갈등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갈등 사회<sup>29)</sup>

28) 2012년 5월 의회 내에서의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에 대한 배려라는 합의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다수결 원리의 정당성과 책임성, 효율성 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사회적 갈등을 둘러싼 사회적 분열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면서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정당은 지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익을 고려하고, 공공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함

○ 치킨 게임(chicken game)에서 윈-윈(win-win)으로 전환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투표를 통한 선호집합적 의사결정 방식)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심의민주주의<sup>30)</sup>와 같은 열린 논의방식의 제도화로 갈등 해소
- 예컨대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sup>31)</sup> 같은 민주적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국가 차원에서 ‘공론위원회’와 같은 갈등 조정기구를 창설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공토론, 숙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29)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및 핼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 그리고 환경갈등(개발 vs. 보존) 등이 곳곳에서 발생. 공공갈등의 상당수가 불가피하지 않은 갈등들이고, 갈등 양상이 오래 끌고 지나치게 대립적이라는 평가임

30)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음. 다만, 그것이 지니는 한계(결정성 부족, 참가자의 지대추구 가능성,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 공간적·규모적 제약 등)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이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참여회의(서울 도봉구), 주민참여 구정평가제도(광주시 광산구), 시민감사관제(부산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단(경기도 수원시), 시민배심원제(울산 북구)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

31)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통해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공정한 해결을 침해하거나 강자의 양보를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임

## 《 아일랜드 개황 》

### ○ 개요

- 국명 : 아일랜드공화국(Republic of Ireland)
- 수도 : 더블린
- 건국일 : 1921년 12월 06일(영국에 의해 700년간 지배)
- 인구(명) : 4,722,028(2012년)
- 공용어 : 영어, 아일랜드어
- 종족 구성 : 아일랜드인(켈트족, 87.4%), 기타 백인(7.5%), 아시아인(1.3%), 흑인(1.1%), 혼혈(1.1%), 기타(1.6%)
- 종교 : 로마 가톨릭(88.4%), 아일랜드 교회(3.0%), 기타(기독교 등 8.6%)
- 통화 : 유로화(Euro)
- 1인당 명목 GDP(\$) : 44,781(2012년)
-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GDP(PPP)(\$) : 41,739(2012년)

### ○ 오랜 식민지배와 독립의 역사

- 유럽의 끝자락에 위치한 농업국가로 유럽 국가 중 산업화가 제일 늦음
- 26개 군이 독립했고, 가톨릭 교도가 많아 종교 분쟁의 원인이 됐던 북아일랜드 6개 군은 영국령으로 남음
- 1921년 건국 후에도 형식상 영연방에 속했으나 1948년 헌법 개정, 1949년 국명 개칭(아일랜드 공화국)을 거쳐 연방에서 이탈, 완전 독립을 이룸

### ○ 공화제와 양당 체제의 의원내각제

-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임기 7년, 연임 가능)가 가미된 의원내각제(양원제)
- Fianna Fail(독립 이후 상당기간 집권)과 Fine Gael 양대 정당이 노동당, 녹색당, 진보민주당, 민주좌파 등 소수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집권
- 대통령은 '97.11. 선출된 메리 매컬리스(Mary McAleese)이며 재선('04.11.)에 성공(총리는 2007년 버티 아헌(Bertie Ahern) 지명)
- 1955년 UN 가입, 1973년에 덴마크, 영국과 함께 유럽연합 가입

## 참고문헌

- 강유덕 (2014). 아일랜드 경제의 발전과 위기 :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원?. EU 연구, 제37호, 187-235.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
- 권형기 (2014).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 - 아일랜드 사회협약 모델의 수립과 진화. 서울: 후마니타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08).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시사점: 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프랑스·스웨덴. 연구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김용철 (2010). 사회협약정치의 출현·교착·지속에 대한 분석. 산업노동연구, 16(2), 33-75. 한국산업노동학회.
- 김윤태 (2009). 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 한국과 아일랜드의 재해석. 동향과 전망, 통권 75호, 183-214. 사회과학연구소.
- 김준석 (2010). 영국 정치체제는 '다수제 모형'의 전형인가?: 레이파트의 '합의제-다수제' 분류가 가져온 영국 정치체제에 대한 오해. 분쟁해결연구, 8(3), 55-85.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 선학태 (2006). 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서유럽 정책협약과 갈등조정 시스템. 과주: 한올아카데미.
- 선학태 (2008). 아일랜드 기적: 사회협약정치의 혁신성. 한국정치연구, 17(2), 273-301.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 신동면 (2005). 아일랜드 발전모델 : 사회협약과 경쟁적 조합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1호, 229-323. 한국정치학회.
- 심상용 (2007).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7(3), 169-206. 한국노동연구원.
- 유성진 (2010).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과 민주주의. 분쟁해결연구, 8(3), 25-54.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 임상훈·루치오 바카로 (2006). 약자들의 사회협약: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한국 사례 비교 연구. 워킹 페이퍼 2006-01. 한국노동연구원.
- 장선화 (2014). 사회협약의 정치: 세계화시대 경제위기와 집권 정당의 위기극복 전략(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한국정당학회보, 13(2), 63-99. 한국정당학회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연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연브리프」의 전문을 [www.ydi.or.kr](http://www.ydi.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산업진흥회 신관 3층  
전화: (02) 2070-3300 팩스: (02) 2070-3331 (우 150-729)